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27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6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6. 12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6. 17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○ 고성군공설시장중 재개발한 현대화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공설시장 사용료 수납에 있어 재래시장과 현대화 시장을 구분함.
(조례안 제6조제1항)

○ 재개발시장에 입주상인의 우선순위를 명시함.(별표 2)

○ 재개발시장의 사용료 : 년 10㎡당 112,700원으로 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현대화된 시장과 재래시장의 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재개발이전 시장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 우선권을 명시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

○ 질의 : 현대화된 시장의 사용료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입주자의 의견은 어떤가

● 답변 :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, 제24조에 의거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물과표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현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5. 토 론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1997. 6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